

아래 법령에 의거 <해당없음>으로 공시함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(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2.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